

# 일경험 지원사업(중소기업 탐방, 재학생 직무체험) 개요

## 1.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

### 1 '18년도 사업 기본방향

- ◆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관 전문성·내실화 강화
- ◆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형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◆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을 통한 프로그램 현장성 강화

#### ① (운영기관 전문화) 운영기관의 체계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기관의 전문성·내실화 강화

- 운영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('18년)
- 운영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'나만의 프로그램' 신설('18년)  
\* 기관별 약정인원의 20% 수준에서 운영기관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가능
- '우수' 등급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('19년)  
\* (현행) 차년도 선정시 가점 → (개선) 우수 운영기관 정부포상 추천 추가 검토

#### ② (표준 프로그램 제공) 참여자 유형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- 고교생·비진학청소년·대학재학생·취준생 등 다양한 유형에 맞는 표준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개발·보급('18년)

#### ③ (프로그램 운영 개선) 프로그램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·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도모

- 고교생·대학재학생 편중의 프로그램 운영을 일경험이 필요한 비진학청소년 또는 학교밖 취준생 등으로 과정 확대 유도(전체 20%이상)
- 탐방기업 선정\* 또는 현장 체험시간\*\*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도모

\* 탐방기업 선정: (종전) 우수 중소·청년친화강소기업 위주 → (개선) 수요자 요구 또는 운영기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(전체 과정의 20% 수준, 대기업 참여 제외)

\*\* 현장체험시간: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·개선

- 기업담당자가 기업탐방에 앞서 사전 특강 또는 교육에 참여토록 하여 이론중심 직무탐색을 현장감 중심으로 개선 유도  
↳ 영국 「Education and Employer 재단」 사례 벤치마킹
- 기업참여 촉진을 위해 우수 탐방기업 선정 및 프로그램 가이드 제공 추진

## 2 '18년도 사업 세부내용

### 1 사업목적 및 근거

- (목적)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, 우수한 중소·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
- (추진근거)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4조 및 제25조
  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8조의2
  - 「고용보험법」 제25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

### 2 사업규모 및 기간

사업규모(목표인원)	예산	사업기간
10,000명	2,972,000,000원	계약체결시 ~ '19.2월말

### 3 참여대상

- (참여자) 만 15세 ~ 만 34세 미취업 청년
  - \* 고교생 및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며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
  - \* 운영기관별 배정인원(예산)의 40% 이상은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 출신(재학생 포함)
- (탐방기업) 청년친화강소기업·강소기업(고용부 선정), 우수 벤처기업(벤처기업협회 선정), 우수 중소기업(중기청·이노비즈협회 선정) 중에서 운영기관별 배정인원의 40% 이상 참여
  -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에 탐방 가능
  - \* 「중견기업법」 상 중견기업도 탐방 가능(운영기관별 배정인원의 30% 이내, 대기업은 제한)
  - \* 미래성장동력산업 19대 분야

미래신산업	주력산업	공공복지·에너지산업	기반산업
① 지능형로봇	⑥ 스마트자동차	⑩ 맞춤형 웰니스케어	⑮ 융복합소재
② 착용형 스마트기기	⑦ 심해저 해양플랜트	⑪ 신재생 하이브리드	⑯ 지능형 반도체
③ 실감형콘텐츠	⑧ 5G 이동통신	⑫ 재난안전시스템	⑰ 사물인터넷
④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	⑨ 수직이착륙무인기	⑬ 직류송배전시스템	⑱ 빅데이터
⑤ 기상훈련시스템	-	⑭ 초소형 발전시스템	⑲ 첨단소재가공시스템

#### 4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

- (프로그램 기획 및 내용) “①대상\* → ②학년 → ③전공·산업분야”별 맞춤형\*\* 프로그램을 사전에 구성·기획(사업계획서에 사전 반영)

\* (대상) 고교생, 비진학청소년, 대학생(재학생·졸업예정자), 취업준비생, 청년 장병 등  
 ↳ 대학의 경우, 자대 재학생·졸업생 외 대상(고교생·타대생 등)을 반드시 30% 이상 포함  
 ↳ 고졸 비진학청소년, 대졸 취업준비생, 청년장병 등 대상의 프로그램은 운영기관 배정인원의 20% 이상 반영

\*\* 예) 인문계 고교 3학년 대상 지역 중소기업체험 과정, 인문·사회계열 대학 재학생 대상 방송·미디어산업 과정, 취업준비생 대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과정 등

- 운영기관은 사전에 기획·구성된 프로그램 대상별로 학생모집 및 기업 발굴,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등 사업 추진

<프로그램 프로세스 예시>

① (사전 프로그램 기획) 고교생, 대학생(재학생·졸업예정자) 등 대상 확정 및 전공·희망산업별 프로그램 구성

② (학생모집·기업발굴) 온라인 또는 학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참여 학생 모집, 강소기업·우수중소기업 풀 등을 활용해 대상 및 전공·희망산업 분야 등에 맞는 참여기업 발굴

- 청년친화강소기업, 우수 중소기업,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업 등을 우선하여 발굴

③ (프로그램 구성) 전공·산업별 진출가능 직업, 관련 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, 기업 CEO·인사담당자 등 특강, 팀프로젝트 등

\*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기획시 활용

- (팀활동) 일방적 강의식 전달 방식을 지양하고, 팀빌딩&팀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주제 등으로 공동목표 수행 등

- (기업탐방) 우수기업 성공사례 탐구, CEO·인사담당자 등 멘토 특강 및 네트워크, 단기 프로젝트 수행, 현장체험, 기업체험기\* 작성 등

\* 작성된 기업체험기는 워크넷(일경험 홈페이지)에 등록(기본 기업정보, 근로조건, 인재상, 복지제도, 조직문화, 채용문화, 체험후기 등)

- (청년고용정책 안내) 직무체험·청년공제·해외취업·대학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제도, 직업훈련, 취업성공패키지 등 제도 홍보

- (취업전략 수립) 자기특성 분석, 희망업종·직무 등을 기반으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, 대략의 경력개발계획 수립

- **(운영시간)**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“5일 이내”로 자율적으로 기획 하되, 기업 현장탐방은 반드시 일정시간 이상 확보

\* 프로그램 운영일수별 운영시간

일 수	1일	2일	3일	4일	5일
시 간	5시간 이상	14~16시간	21~24시간	28~32시간	35~40시간
기업현장 체험시간	2시간 이상 (1개소)	3시간 이상 (1개소)	5시간 이상 (2개소)	7시간 이상 (2개소)	8시간 이상 (3개소)

- \* 등록·식사·취침·자유시간,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시간만을 의미하며, 정부에서 지원하는 “청년고용정책” 안내 및 홍보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포함
- \* 기업탐방 이후의 프로그램 진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20시 이후 프로그램 진행은 자제

- **(운영규모)** 1회 참여인원은 가급적 30~50명 내외로 하되, 탐방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

- 특정학교(고교·대학)에 연수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\*, 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체험은 분반운영\*\* 가능

\* 특정 고교·대학 재학생은 운영기관별 배정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

\*\* 예) 교육 등 집체프로그램은 30~50명 내외 운영, 기업탐방은 5~10명 분반 운영

- **(운영지역)** 선정된 광역권 내의 연수장소·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사전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해당 광역권 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

- 2개 이상의 광역권에서 사업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·선정 심사 시부터 통합 신청 및 관리 예정

## 5 청년취업지원사업 간 연계

- **(취성패Ⅱ 연계)** 최종학년 재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, 취성패 참여자 우선선발 또는 탐방 후 취성패에 참여 등 상호 연계를 통해 정책체감도 및 취업준비 역량 강화

\* 운영기관별 약정인원의 10% 이상 취성패로 연계 의무

- **(희망사다리장학금 연계)**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대상 우선 선발 등을 통해 취업연계 가능토록 집중 홍보

\* 중소기업탐방 참여자 희망사다리 장학금 선발 우대 및 취업준비 교육시간 인정

## 6 지원내용

- (사업비) 참여청년 1인당 1일 평균 13.5만원 내외를 운영기관에 지원
  - \* 운영비 단가(1인당 1일 기준): ①1일 또는 무박과정 10만원, ②2박3일 이상 과정 17만원
    - ↳ “2박3일 이상” 과정을 운영기관별 배정인원의 30% 이상 편성
  - \* 운영기관은 참여한 연수생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을 수 없음
- (세부내역) 인건비(총 사업비의 25% 이내), 운영비, 여비 등
- (재해보험) 참여자 재해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가입
- (운영기관 이윤) 기관별 실적에 따른 총 사업비의 10% 이윤 인정
  - \*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윤 불인정(사업비만 지원)

## 7 추진체계 및 운영기관 선정

- (추진체계) 프로그램 기획·홍보, 참여자 모집, 기업발굴, 운영 등 사업 전체를 운영기관에 위탁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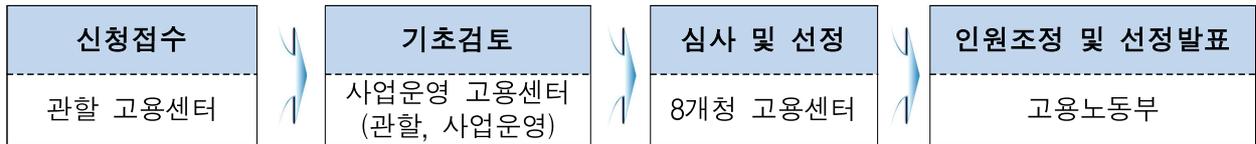


- (운영기관 신청자격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
  - i) 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·업종별 경제단체·협동조합, 기타 사업주 단체(비영리법인) 및 특수공법인 중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
  - ii) 기타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·무료 직업소개 사업자,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
  - iii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, 제2호,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
    - \* '18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한함
  - iv) 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
  - v)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

<신청제외>

- 「직업안정법」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
-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

○ (선정절차) 관할센터 접수 후 기초검토 및 심사를 거쳐 선정기관 발표



- (심사위원회) 8개청(대표지청) 단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되, 고용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 공무원,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5~10인 내외로 구성
- (선정심사기준) 사업계획이 본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

기준	세부기준	심사항목
사업수행 능력 (40%)	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경험(20%)	최근 3년간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
	해당사업 관련 전문성(10%)	사업과 관련한 정보, 사업을 담당할 전문컨설턴트 보유 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갖추었는지 여부
	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(10%)	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었는지 여부
사업내용의 적절성 (40%)	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(10%)	공모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
	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(10%)	사업목표 등 사업내용의 현실적 수행가능성(사업목표 달성 가능성)
	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등 모집 방안(10%)	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모집방안, 강사풀 구성·운영방안 등 계획 포함
	프로그램 구성 적절성 (10%)	사업의 목적과 참여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여부,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(우선 고려), 장·단기 과정의 적절한 편성 여부, 청년고용정책(취성패 등) 연계방안 등
유관기관과의 협력(20%)	고용센터와의 협력 관계 (10%)	사업위탁 계약 당사자인 고용청(대표지청), 관할 고용센터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
	기업 네트워크 보유(10%)	기업네트워크,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공단,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풍부한 기업·산업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

\* '17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성과평가지 '우수'등급 기관은 가점(10점 부여)

- (배정인원 조정) 각 신청기관별 목표인원, 지역별 참여대상 현황, 선정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본부에서 권역·기관별 목표인원 조정\*

\* 본부 주관, 8개청(대표지청) 고용센터 담당 참여

○ (신청기간 및 제출서류)

◆ 사업제안서 신청: '18.1.31까지 제출

- ① 지원신청 공문 1부, ② 신청서-사업제안서 포함
- ③ (대학인 경우)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, (민간기관인 경우) 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

⇒ '16년, '17년 기선정 대학은 ③항은 제외

- (제출처)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, 소재지 외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

- 단, 2개 이상의 광역단위\*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하나의 광역권을 선택해서, 전국 단위(서울권 포함 4개 광역권 이상)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고용센터로 신청서 등 제출

\* (광역단위) 서울청, 중부청, 경기지청, 강원지청, 부산청, 대구청, 광주청, 대전청

- (결과발표) '18.2월 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·일경험홈페이지 게시

〈「중소기업 탐방」 프로그램 개요〉

- ◆ **(목적)**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, 우수한 중소.강소기업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
- ◆ **(대상)** ▲ 운영기관(민간): 대학, 직업소개사업자, 비영리법인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 
▲ 탐방기관(기업): 청년친화강소기업, 우수중소기업 및 벤처기업, 신기술·신성장 유망기업  
▲ 참여자: 만 15세~34세 이하 미취업 청년

◆ **(사업규모 및 기간)** 10,000명( ~'19.2월말)

◆ **(탐방기간)** 1일(5시간) ~ 5일 범위내에서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

\* 프로그램 운영일수별 운영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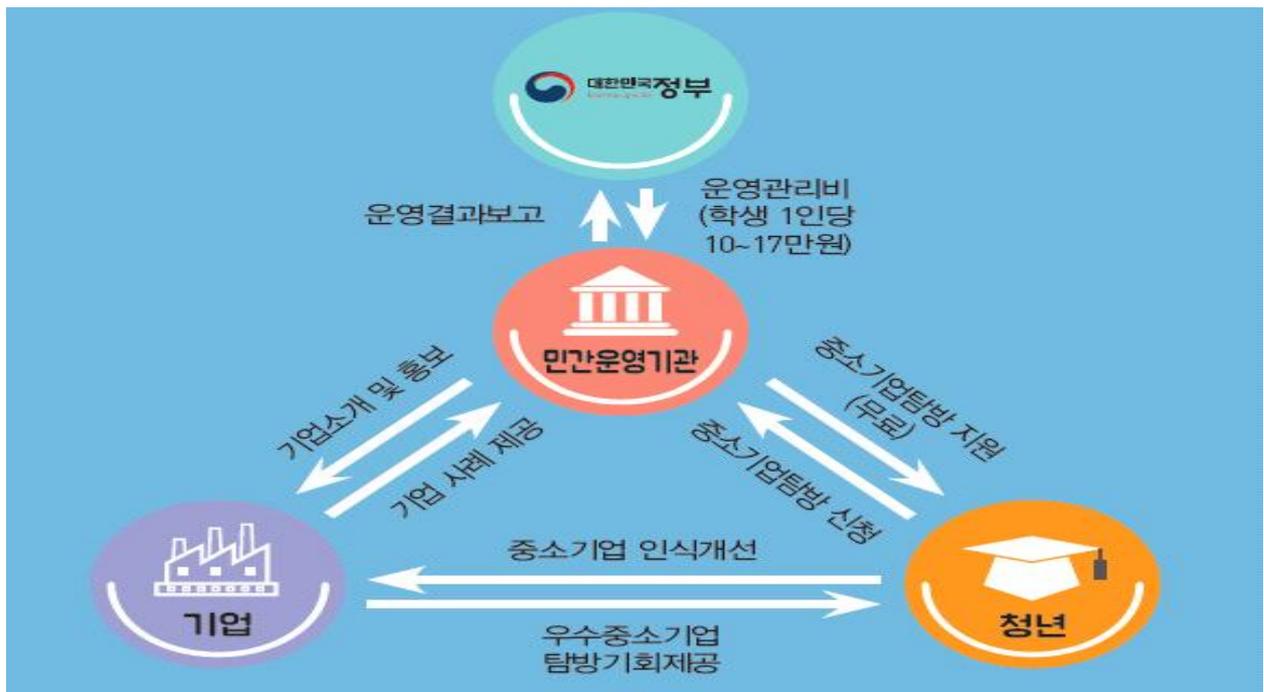
일 수	1일	2일	3일	4일	5일
시 간	5시간 이상	14~16시간	21~24시간	28~32시간	35~40시간
기업현장 체험시간	2시간 이상 (1개소)	3시간 이상 (1개소)	5시간 이상 (2개소)	7시간 이상 (2개소)	8시간 이상 (3개소)

\* ex) 인문대학 재학생 대상 미니인턴 과정(2박3일), 특성화고 졸업반 우수 중소기업 과정(1일) 등

◆ **(탐방내용)** 기업CEO 또는 인사담당자 특강을 통한 일경험 중요성 공유, 기업탐방을 통한 현장 견학, 기업체험기 작성 및 자기특성 분석을 통한 취업전략 수립 등 실시

◆ **(지원내용)** 운영기관에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(참여자는 무료)

▲ 1일 또는 무박 과정: 1일 1인당 10만원, ▲ 2박3일 이상 과정: 1일 1인당 17만원



□ **기관개요**

- 고교·대학 대상 미래직업 관련 동기부여, 지식기술, 체험기회 등 제공을 위한 기업과의 효과적 파트너십 구축 목적으로 설립('09년)
  - \* 민간기관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창립되었으나, '14년 이후 교육부에서 재정 독립

□ **주요기능**

- 대표적 직무체험 프로그램으로 「Inspiring the future\*」 수행
  - \* 재직자가 학교를 방문, 학생들에게 직장생활에 대한 특강 등 프로그램 진행
- 학교가 재단 홈페이지에 수요 신청 → 재단이 재직자에 참여 요청

□ **주요활동 내용**

- 홈페이지를 통한 교원-직장인(재직자) 매칭 및 네트워크 구축
  - 교원 약 1만명(전체 고등학교의 약 85%), 재직자 약 3만3천명 풀 확보
    - \* 재직자는 재직분야·업무, 교원은 학생의 진로탐색 분야 입력 → 홈페이지 내 매칭
- 기업부담 최소화(연간 1시간)를 통한 참여 독려 및 재능기부 유도
  - 지속적 네트워크 및 관계형성으로 추후 학생의 현장방문까지 확대
    - \* '학생들에게 1년에 1시간만 투자'라는 슬로건으로 재직자들의 참여 유도

□ **주요시사점**

-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의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문화 확산
  - 유사 국내사례(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등)도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탐방시간의 여건이 제한적일 경우, 사전에 기업담당자를 교육장으로 초빙하여 탐방기업에 대한 소개, 직무 설명 등으로 활용 필요
    - \*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탐방기업시 질문사항 등을 준비토록 하여 탐방활동 효율화 도모

## 2. 재학생 직무체험

### 1 '18년도 사업 기본방향

- ◆ 직무체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 육성
- ◆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현장여건 조성(단가 현실화 등)
- ◆ 타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를 통한 일경험 시너지 극대화

- ① **(운영기관 전문화)** 현장접점에 있는 대학 등 운영기관의 체계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관 육성
  - '우수' 등급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 추진('19년)
- ② **(기업 인센티브 확대)** 기업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
  - 일경험지원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나, 현재의 지원책으로는 열정페이로 변질 우려
  -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건실한 기업 참여 촉진('18.下)
    - \* 관리자지원금, 사업주 훈련비용 환급 한도 상향,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 추가 검토
  - 프로그램 가이드 제공 및 고용·노동이 연계된 행정적 지원책 마련
    - \* (가칭) '일경험 마일리지' 신설하여 근로감독 면제 또는 각종 지원사업 선정 우대 검토
- ③ **(정부지원금 현실화)** 연수지원금(40만원) 등 정부지원금 현실화
  - 현실과 동떨어진 직무연수금이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정책 의지를 왜곡하거나 불신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팽배
  - 연수지원금을 현재 소비수준 등에 맞춰 상향 검토('18.下)
    - \* 연수지원금, 운영기관 관리비 등을 현실 수준 고려하여 단가 현실화 검토
- ④ **(타프로그램과 연계 강화)** 청년취업아카데미(고용부), 교육근로장학사업(교육부) 등과 연계를 통해 직무체험사업의 시너지 극대화('18.上)

## 2 '18년도 사업 세부내용

### 1 사업목적

-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 대학 2~3학년 재학생들에 대한 산업현장 일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 지원

### 2 추진근거

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4조(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) 및 제25조(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)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8조의2(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)
- 「고용보험법」 제25조(고용안정·취업촉진) 제1항제3호, 시행령 제35조제2호

### 3 사업규모 및 기간

사업규모(목표인원)	예 산	사업기간
5,000명	5,706,000,000원	계약체결시 ~ '19.2월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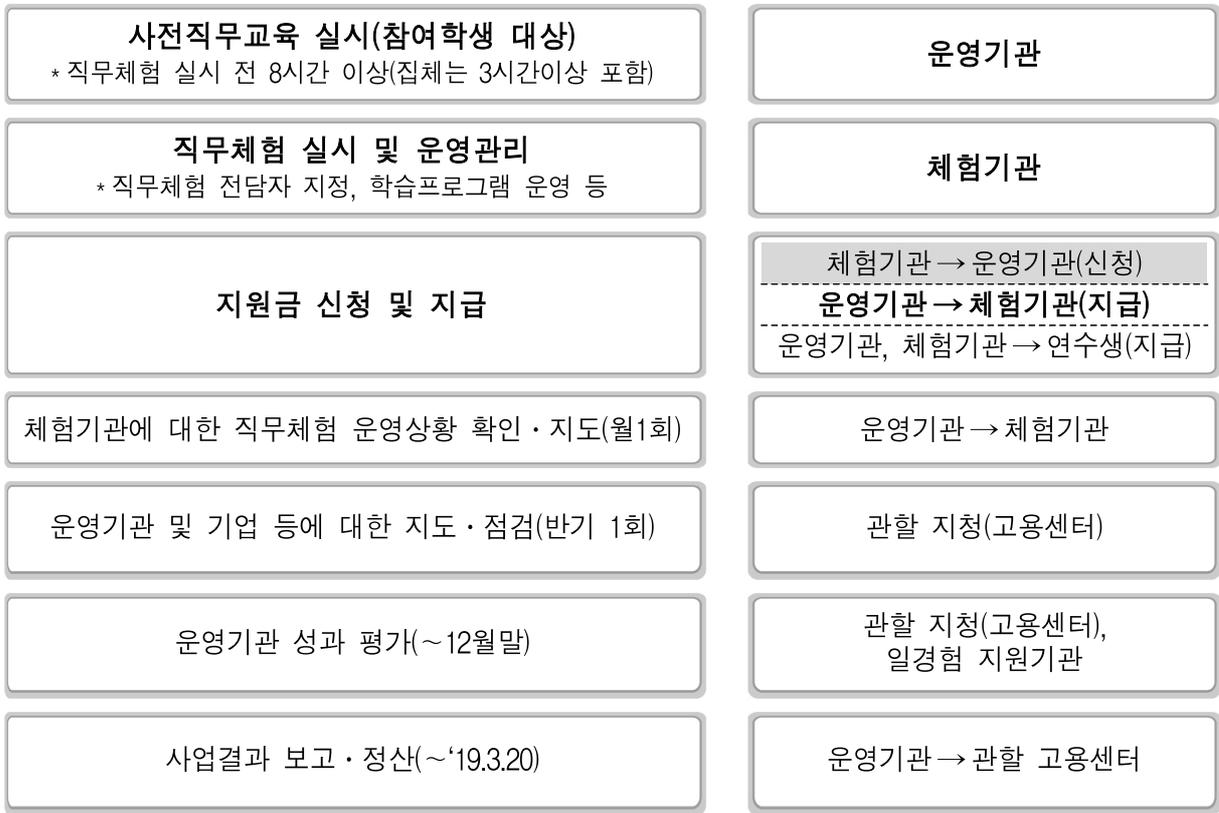
### 4 참여대상

- (참여학생) 대학(전문대 포함)에 재학 중인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 2~3학년 재학생 중심
  - \* 최종학기 재학생도 참여 가능하나, 주 전공이 공학계열은 참여 제외
  - \*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실습과정,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는 참여 제한
- (체험기관)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(대기업 포함)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사회·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위주
  - \* 운영기관인 대학이 자대생을 행정업무 등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(대학 내 기업은 가능)
  - \* 5인 이하 벤처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5인 미만기업(학원, 교습소 등 제외)은 운영기관 약정인원의 30% 범위내에 참여가능
- (제외기관) 소비·향락업체, 직접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 및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등은 참여 제한

## 5 운영체계 및 과정관리

- (법적지위) 참여학생은 「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」(16.2.1)에 따라, 근로자가 아닌 “일경험 수련생”으로서의 지위
  - \* 단,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여야 하며, 운영기관 및 청소년 근로권익센터(7개 권역) 등을 통한 신고·구제절차 마련
- (체험기간) 1개월(4주) 이상 3개월 이하
  - \* 학생·기업·대학 간 합의로 3개월 이상 체험은 가능하나, 초과기간은 정부지원 제외
- (체험시간) 1일 연수시간은 6~8시간(주 40시간 이내)
  - \* 단, 학생·기업·대학 간 협의를 통해 3~5시간 범위로도 가능(정부지원 50% 감액)
  - \* 원칙적으로 연장, 야간, 휴일에 직무체험을 할 수 없으며, 여학생의 경우 유해·위험한 내용의 직무체험을 시킬 수 없음
  - \* 체험기관은 1일 연수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
- (체험장소) 체험기관(기업 등)의 사업현장 또는 교육시설
- (사업 운영체계) 대학(또는 민간운영기관)이 운영기관으로서 체험 과정 기획, 학생모집 및 체험기관 발굴, 직무체험 운영 등 총괄





○ (과정관리) 운영기관은 사전직무교육, 기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, 사후관리 등 총괄, 체험기관(기업 등)은 전담자 지정, 학습프로그램 수립·운영, 직무체험 결과 피드백, 학생관리 등 체험과정 관리

- (보험가입) 고용부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

\* 가입기간은 3개월 한도이며, 그 이외의 기간은 운영기관이 별도 가입



## 6 지원내용

- (기업지원) 학생 1인당 월 47만원 →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(1인당 월 40만원), 관리자 지원비(1인당 월 7만원)
- (운영기관지원) 학생 1인당 월 1만원 → 사전직무교육, 모니터링 등
  - \* 기업지원금 등 계획인원에 따른 사업비를 운영기관에 일괄 지급 후, 운영기관이 참여기업 등에 지원금 지급
- (학생지원)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월 40만원 이상 연수지원비 지급 → 대학(자율 매칭) + 기업(월 40만원)
  - \* 대학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 가능, 참여기업은 1인당 월 40만원 외 학생에게 추가지급 가능
  - \* 자치단체가 대학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학생 연수지원비 매칭 또는 추가지원 가능

## 7 운영기관 선정

- (신청자격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
  - \*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
  - \*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“개인형 직무체험” 시행은 별도 검토

※ (심사제외) '18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(교육부 발표)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은 심사 제외

- (심사절차) 관할센터 접수, 자격요건 검토 등 심사 후 선정

신청접수	기초검토	심사	선정발표
관할 고용센터	관할 고용센터	<1차> 지방고용청(대표지청) 주관심사('18.2월중) <2차> 고용부 본부 주관 심사('18.2월중)	본부

- (심사위원회) 각 청별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되, 고용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 공무원,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5~10인 내외로 구성
- (심사기준)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고, 사업수행능력(50%), 사업계획의 적정성(50%) 등을 고려하여 선정

기준	세부기준	심사항목
사업수행능력 (50%)	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경험(30%)	최근 3년간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
	해당사업 관련 전문성(20%)	사업과 관련한 정보, 사업을 담당할 전문컨설턴트 보유 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갖추었는지 여부
사업계획의 적정성 (50%)	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(20%)	공모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* 최소 제안인원: 30명 이상 * 지자체, 기업단체 등과 MOU 등 매칭 우대 * 청년취업아카데미, 교육근로장학금 사업과 연계 추진 우대
	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(10%)	사업목표 등 사업내용의 현실적 수행가능성(사업목표 달성 가능성)
	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등 모집 방안(10%)	참여기업 또는 참여자 모집방안, 강사풀 구성·운영방안 등 계획 포함
	프로그램 구성 적절성 (10%)	사업의 목적과 참여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여부 (인문계 융합과정, 예체능계 특화과정 등), 청년고용정책 (취성패 등) 연계방안 등
가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대학(2점)</li> <li>▸ 사전직무교육 프로그램 자체 제작·운영대학(2점)</li> <li>▸ 멘토링프로그램 또는 직종별 OJT 훈련 실시(각 2점)</li> <li>▸ 체험기업과의 MOU 체결내용 첨부(2점)</li> </ul>

\* '17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성과평가지 '우수'등급 대학은 가점(10점 부여)

○ (신청기간 및 제출서류)

◆ 사업제안서 신청: '18.1.31까지 제출

- ① 지원신청 공문 1부, ② 신청서-사업제안서 포함
- ③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

⇒ '16년, '17년 기선정 대학은 ③항은 제외

○ (결과발표) '18.2월 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·일경험홈페이지 게시

〈 「재학생 직무체험」 프로그램 개요 〉

- ◆ (대상) ▲ 운영기관(대학): 대학, 산업대학 및 2~3년제 전문대학 중 선정된 대학
  - ▲ 체험기관(기업 등):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등
    - ↳ 사업특수성을 고려, 벤처기업 등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참여(약정인원 30% 이내)
    - ↳ 소비.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, 계절적.일시적 인력수요업체 등은 참여 제한
  - ▲ 연수생(학생): 운영대학 소속 인문.사회.예체능계열 2~3학년 재학생 중심
    - ↳ 공대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및 최종학기 재학생도 참여 가능
- ◆ (사업규모 및 기간) 5,000명( ~익년도 2월말)
- ◆ (체험기간) 1~3개월 범위(1일 3~8시간, 주40시간 이내) 5시간 미만시 정부지원금 50% 감액
- ◆ (체험학생 법적지위) 근로자가 아닌 '일경험 수련생'으로서의 지위를 가짐
  - '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'(16.2.1.) 적용
- ◆ (체험내용) 단순 업무보조가 아닌 동기부여와 직업의식 고취, 기업문화 경험 및 직무관련 문제 해결 등을 학습프로그램으로 수립하여 이행
- ◆ (지원내용)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자원 출연, 정부는 대학과 기업에 정부지원금 보조
  - ▲ 학생: 직무연수지원금 지급(기업과 대학이 매칭하여 최대 80만원+α)
    - 현장실습규정에 의한 직무체험시 해당 학교 학칙 등에 따라 학점(1~3학점) 부여
    -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시 우대 취업준비장려금(200만원) 관련 교육시간(40시간) 인정
  - ▲ 기업: 기업 부담분(1인당 월40만원)의 연수지원금과 전담자 수당(1인당 월7만원)을 정부지원 신용보증기금.신한은행의 보증 우선지원 및 보험료 할인(고용센터 추천기업에 한함)
  - ▲ 대학: 운영기관 관리비(학생 1인당 월1만원)을 정부지원

